

주문자상표부착방식(OEM) 기구·용기 영업자 안내서

□ 배 경

- 수입 기구·용기의 표시, 포장형태 등에 따른 OEM 해당 여부를 안내하여 영업자 자율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편의 도모

□ OEM 수입식품등 관리제도 개요

- (정의*)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제조업소(작업장)에 ①계약의 방식으로 제조·가공을 위탁하여 ②주문자 상표**를 ③한글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
 - * 「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」 제2조제2호
 - ** 상표: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·문자·도형 등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 (「상표법」 제2조제1호)

□ OEM 수입식품등 관리대상인 '상표 표시'의 범위

-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'상표'도 '주문자 상표 표시'에 해당
 - OEM 수입식품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'상표' 표시불가* → 삭제필요
 - * 「수입식품법」 제18조에 따른 OEM수입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 등을 사용한 경우, 부당한 표시·광고에 해당 (「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」 제2조제3호타목)

□ OEM 기구·용기 수입자의 의무

- ①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② 자가품질검사

- (위생평가)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을 통해 2년 이내* 1회 이상 실시
 - * OEM 기구·용기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** 추진 (행정예고 중)
 - ** 「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 고시」 시행('24.9월 예정) 전에 위생평가 주기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제품에 대한 위생평가 주기가 3년으로 연장*됨
 - ※ 예) '22.11.1.일 최초수입(수입신고확인증 발급)된 OEM 기구·용기의 경우, '24.10.31.일까지 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, 고시 개정('24.9월) 시 '25.10.31.일까지로 주기가 연장됨

- (자가품질검사) **재질별**로 **6개월**마다 **1회 이상*** 실시(세관장 '신고필증 발급일' 기준)

- * 수입신고된 제품(Lot A)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(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)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라면 자가품질검사 주기 이후에 해당 제품(Lot A)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, 자가품질검사 주기(Lot A 제품의 신고필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) 이후 수입되는 동일 제품(Lot B)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

※ 예) 수입신고필증 발급일이 5월 19일, 9월 15일, 11월 17일, 12월 20일인 경우

- 최초 수입(5월 19일)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, 6개월 이내에 수입한 제품(신고필증 발급일이 9월 15일, 11월 17일인 제품)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나,
- 자가품질검사 주기(~11월 18일) 이후에 수입된 제품(신고필증 발급일이 12월 20일인 제품)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

□ 수입 기구·용기의 OEM 해당 여부 판단기준

① **한글포장지 사용** : 최소판매단위 포장에 (한글표시사항 이외에 별도로) 제품명* 등을 한글로 기재(표시)한 경우

- * 별도로 기재한 (한글) 제품명이 한글표시사항의 제품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특성 등을 (한글로) 표현하고 있는 경우, '한글포장지를 사용'한 것에 해당

★ 최소판매단위에 '**한글표시사항**'만을 **현품 또는 포장지에 인쇄**하거나, **스티커로 부착**한 경우는 한글포장지 사용 미해당 ➡ **OEM 수입식품등 미해당***

- * 해당 제품 수입신고 시 '주문자상표부착' 여부에 '아니오' 표시, **영업자 의무**
(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, 자가품질검사) **면제**(기준에 수입된 동일 제품에 소급 적용)

★ '**OEM이 아닌 제품**'에 '**상표를 표시**'한 경우 '**부당한 표시·광고**'에 해당할 수 있음

※ 한글포장지 사용 미해당 예시



<제품에 직접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>



<최소판매단위 포장지에 한글표시사항만 표시>

② **주문자(국내 식품 영업자) 상표 표시** : 주문자의 상표(기호·문자·도형 등)를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제품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

* 특허청 미등록 상표도 '상표를 표시한 경우'에 해당하나, '국내 식품 영업자'의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**는 '주문자 상표 표시'에 해당하지 않음

** 예) 지자체·은행·학교 등에서 판촉·홍보 등을 위하여 수입하는 제품(기구·용기)에 해당 지자체·은행·학교의 상표·로고 등을 표시한 경우

③ **제조·가공 위탁** : 국내 식품영업자 또는 다국적기업의 '외국소재 자사공장 (또는 자회사)'이 아닌, '다른 공장(제3자)'에게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, 제조·가공 위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

* 다국적기업 또는 국내 식품영업자의 **외국소재 자사공장** 생산제품 : 제조·가공 위탁행위가 없어 OEM 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음

□ 수입자(지방청) 확인 및 조치사항

○ (OEM 수입식품등 조건 충족 시) ① 수입신고서 '수입신고 표시 여부' 중 '주문자상표부착'란을 "예"로 체크*하거나, ② **영업자 상표 삭제**** 후 통관

* 수입신고서 상세화면

▶ 수입신고 표시 여부

* 유기식품 여부	☐ 예 ☒ 아니요
* 식품조사처리 여부	☐ 완제품조사 ☐ 원료조사 ☒ 해당없음
* 영유아섭취대상	☐ 예 ☒ 아니요
* 주문자상표부착	☒ 예 ☐ 아니요

** 영업자 의무사항(해외제조업소 위생평가, 자가품질검사)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

○ (일반 수입식품등) OEM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수입식품등에 영업자 상표를 표시한 경우, '부당한 표시·광고'에 해당할 수 있음

참고

OEM 기구 · 용기 관련 규정

「수입식품법」

제18조(영업자 준수사항) 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 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②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·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(이하 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”이라 한다)을 수입·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·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**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하게** 하여야 한다.
2.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**실시**하고,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「상표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**상표**”란 자기의 상품(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(標章)을 말한다.
2. “**표장**”이란 **기호, 문자, 도형, 소리, 냄새, 입체적 형상, 홀로그램·동작 또는 색채**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(出處)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.
10. “**등록상표**”란 **상표등록을 받은 상표**를 말한다.